

## 강제동원문제에 관한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 (서울)

- 일시 및 장소: 2019. 11. 20.(수) 14:00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 기자회견 참석자 (사회: 최용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박성우(노무사,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회장)
  - 김호철(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권두섭(변호사, 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법률원 대표변호사)
  - 박찬운(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권법학회 회장)
  - 최은실(노무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위원장)
- 공동선언 참가단체 (한국: 6개 단체, 일본: 7개 단체)
  - 한국: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인권법학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단체명 가나다 순)
  - 일본: 오사카노동자변호단, 사회문화법률센터, 자유법조단, 청년법률가협회 변호사 학자 합동부회, 일본민주법률가협회, 민주법률협회, 징용공 문제의 해결을 지향하는 일본 법률가 유지 모임 (단체명 50음 순)
  - 일본의 경우 변호사 및 연구자 등 123명과 1개 단체가 공동 선언에 추가 찬동(2019. 11. 20. 기준)
- 일본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9. 11. 20.(수) 15:00 / 도쿄 니혼바시공회당 3연수실
  - 담당: 변호사 가와카미 시로(川上詩朗) / 080-5506-7825

[선언문]

## 강제동원문제에 관한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

2018년 10월 30일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양국 정부간 극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바, 양국 관계는 '최악의 사태'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문제는 오로지 정치적·외교적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징용노동자 또는 근로여자정신대 등으로 동원되어 급료도 지급받지 못한 채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입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 회복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악화되고 있는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한·일 양국 시민의 상호 이해와 상호 신뢰를 구축하여, 진정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들은 법률전문가로서 강제동원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배상청구권 등의 법적 문제에 관한 의견을 표명함과 동시에, 한·일 양국 정부 및 일본 기업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강구를 요구합니다.

### 다 음

1.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은, 청구권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협정에 의하더라도, 강제동

원 피해자의 개인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으며, 아직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2012년 및 2018년에 선고된 한국 대법원 판결에서도 확인될 뿐만 아니라, 2007년의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그리고 일본 정부가 표명 하였던 입장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것입니다.

2. 한국 대법원 판결은, 피해자의 권리를 확인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소송절차를 거쳐 도출된 결론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법치주의(법의 지배) 아래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일본기업(일본제철 및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 원고의 권리 회복을 위하여 확정판결을 수용하여야 하며, 일본 정부는 일본기업의 판결 수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한일 양국 정부 및 피고가 된 일본 기업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의 회복을 위해, 독일에서의 '기억·책임·미래' 기금,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사건에서의 일본 기업(가지마건설, 니시마츠건설 및 미쓰비시머티리얼 등)과 피해자와의 화해에 기초한 기금에 따른 해결 등도 참고 하면서, 필요하고 가능한 조치를 신속히 도모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9. 11. 20.

**[한국 법률가단체, 가나다 순]**

- |                                |           |
|--------------------------------|-----------|
| 1.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회장 박성우    |
|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회장 김호철    |
| 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회장 이계수    |
| 4.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 대표변호사 권두섭 |
| 5. 인권법학회                       | 회장 박찬운    |
| 6.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위원장 최은실   |

**[일본 법률가단체, 50음 순]**

- |  |               |
|--|---------------|
| 1. 오사카노동자변호단                                     | 대표간사 모리 히로유키  |
| 2. 사회문화법률센터                                      | 공동대표 미야자토 쿠니오 |
| 3. 자유법조단   | 단장 요시다 켄이치    |
| 4. 청년법률가협회 변호사 학자 합동부회                           | 의장 기타무라 사카에   |
| 5. 일본민주법률가협회                                     | 이사장 우자키 마사히로  |
| 6. 민주법률협회  | 회장 요로이 타카요시   |
| 7. 징용공 문제의 해결을 지향하는 일본 법률가 유지 모임 (약칭 ‘일본 유지 모임’) |               |

<아오키 유카, 아다치 슈이치, 이와츠키 코지, 은용기, 우치다 마사토 시, 오오모리 노리코, 가와카미 시로, 자이마 히데카즈, 장계만, 야마모 토 세이타>

**[끝]**

[참고자료]

## 강제동원문제에 관한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 참가 단체 소개

### [한국]

####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노노모)는 2002년 7월 사용자 사건을 대리하지 않는 노무사들이 노동자와 민주노조운동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법률지원과 연대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모임으로 현재 약 190명의 회원이 가입된 단체입니다. 노노모는 창립 이후 지금까지 뉴코아·이랜드 투쟁, 철도노조 파업,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 등 노동자들의 애환이 있는 곳에 함께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노동법의 취지에 맞게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자를 위해 활동할 것입니다.

####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해 모인 변호사들이 1988년 5월 28일에 창립한 단체입니다. 민변은 창립 이래로 해 왔던 양심수(정치범), 시국사건(독재정권에 대하여 민중이 저항한 사건)의 변론과 사

법 감시 활동을 넘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각종 공익소송, 입법 및 정책 제안에 이르기까지 그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재 1200명 가량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사법감시, 노동, 언론과 교육, 여성, 아동, 환경, 민생(민중의 생활), 소수자, 평화와 통일, 미군 문제, 국제통상, 과거사청산, 사이버정보인권, 국제연대의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법학적 조사 연구 발표 및 사회활동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법제도 및 법학의 민주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 □ 법률원 (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2002. 2. 변호사 4명 포함 6명으로 설립된 법률원은 2019년 현재 4개의 산별노조 법률원과 6개의 지역 사무소에서 약 82명(변호사 36명, 노무사 22명, 송무지원 24명)이 일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법률원은 기울어진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기본권의 경계를 확장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 인권법학회

인권법학회는 2015년에 설립되어, 인권에 관한 국내 법·제도와 국제인권규범을 함께 아우르며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이론을 발전시키고 실무에 반영하기 위하여 150여명의 교수, 연구자, 법조실무가,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는 매월 여는 주제발표와 정기 학술행사를 통해 국내·외 정보와 연구 결과를 나누고 문제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인권에 관한 법 이론과 실무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는 우리의 삶과 노동을 빈곤과 위기로 내모는 불안정 노동을 철폐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정식위원회입니다. 법률위원회는 불안정노동의 현상과 경향을 분석하고, 이로 인한 법률문제를 확인하며, 법률투쟁을 지원합니다.

## [일본]

#### □ 오사카노동자변호단

1975년, '총평'(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현재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의 전신인 '오사카지방노동조합평의회변호단'을 결성하였습니다. 1989년 총평 해산 후, 1992년에 명칭을 현재의 '오사카노동자변호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호단 단원은 오사카를 중심으로 현재 약 140명이며, 찬조단체는 약 80단체입니다. 기관지로 La-La 통신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는 한국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상호 교류를 매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 □ 사회문화법률센터

사회문화법률센터는 일본 사회당을 옹호하고 발전시키려는 입장에서 당초 일본 사회당을 지지하는 변호사들이 모여 결성되었으나, 일본 사회당이 해산하고 몇몇 정당으로 나뉜 이후에는, 일본 헌법을 지키는 여러 정당과 협력하여 평화와 인권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변호사 단체입니다. 참가 멤버는 약 400명입니다.

## □ 자유법조단

자유법조단은 1921년에 결성된 변호사 단체입니다. 자유법조단은 ‘기본적 인권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통해 평화롭고 독립된 민주 일본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립자의 한 사람인 후세 다쓰지는 1945년 이전 조선 독립운동에 관한 다수의 사건을 변호하여, 2004년에는 일본인으로 유일하게 대한민국 건국훈장이 수여되었습니다. 현재 약 2100명의 변호사가 단원으로서 전국 모든 도도부현에서 활동하며, 전국에 41개의 지부가 있습니다.

## □ 청년법률가협회 변호사 학자 합동부회

청년법률가협회는, 1954년 헌법을 옹호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및 기본적인 인권의 옹호를 목적으로, 젊은 법률 연구자와 변호사, 재판관 등에 의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현재는 변호사와 연구자에 의해서 구성되는 변호사 학자 합동부회와 사법연수생의 각 기수별부회, 법과대학원 학생부회가 있습니다. 변호사 학자 합동부회의 회원 수는 약 2500명으로, 전국 35지부 10지역으로 나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 일본민주법률가협회

일본민주법률가협회(일민협)는 1961년 10월, 평화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역사적·국민적 대운동인 ‘60년 안보 투쟁’에 참가한 법률가들이 창립한 법률가 단체입니다. 창립 이후 일관하여 일본 헌법을 지키고, 평화,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사법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운동의 선두에 서서 활동하고 왔습니다. 일민협은 학자, 변호사, 세무사, 사법서사, 법원 직원 등 많은 직종의 법률가들이 개인으로 가입하는 동시에, 법률가제 단체 또는 사법에 관련된 노동조합이 단체로서 가입하는, 다른 유례가 없는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민협은 연 10회 법률 잡지 “법과 민주주의”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 □ 민주법률협회

민주법률협회(민법협)는 1956년 6월, 평화·민주주의·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되었습니다. 현재 회원은 오사카를 중심으로 변호사·학자·연구자 외 약 350명, 노동조합·시민단체 약 150 단체를 두고 있습니다. 법률가(변호사나 학자)와 노동자·노동조합, 시민단체가 손을 잡고 활동하는 조직 형태는 매우 독특하며, 그 특징을 살려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다양한 운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을 둘러싼 최첨단 문제에 몰두하는 분야별 활동도 있습니다. 나아가 평화나 민주주의의 문제,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 징용공 문제의 해결을 지향하는 일본 법률가 유지 모임 (약칭 ‘일본 유지 모임’)

일본 유지 모임은, 2018년 10월 30일 강제동원 피해자에 관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강제동원 피해자의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변호사 유지 성명’(이하 ‘유지 성명’. 같은 해 11월 5일)을 제안한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결성한 단체입니다. 유지 성명에는 2018년 12월 말 기준 298명이 찬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소송 원고 뿐만 아니라 원고와 같은 피해를 입은 강제동원 피해자 전체의 해결을 목표로 하여,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끝]